

#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검정(경과조치)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

-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검정(경과조치) 제출 서류준비 시 아래의 서류제출 목록과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시오.

## 1. 서류제출 목록

1. 응시원서 1부
2. 자격검정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(별지서식 제 1호)
3.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4년도 연회비 납부 영수증
4.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또는 해외 임상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5.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 경력 3년 이상 증빙 서류
  - 1)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
    - 1)-1 업무수행확인서 1부(별지서식 제 5호)
    - 2)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기록지 1부(별지서식 제 2호)
    - 3) 개인/집단 인지행동치료 요약기록지 총 3사례(별지서식 제 3,4호)
    - 4) 기타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 15시간 이수 증빙서류

## 2. 인지행동상담전문가 경과조치 자격기준 세부 서류제출 지침

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기준	서류제출 지침
경과조치에 따른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1항, 2항, 3항, 4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.	-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4년도 연회비 납부 영수증 제출
<b>1항.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b> (1)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 (2)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사회복지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	(1)에 해당: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(2)에 해당: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-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확인 서류(공통)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(기관장 발급) : 인지행동치료 기반 업무 수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①-1 업무수행 확인서(별지서식 제5호, 기관장 또는 부서장 발급) :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.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 인지행동치료 기반 업무 수행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만 추가 제출 ②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 기록 경력지(별지서식 제2호) ③ 개인 인지행동치료 요약 기록지(별지서식 제3호), 집단 인지행동치료 요약 기록지(별지서식 제4호) ④ 기타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<b>(3. 세부 서류제출 및 작성지침 참조)</b>

<p>2항.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교육 2023 인지행동치료전문가 과정 웨비나 시리즈(기본과정 1~4회기), 2023 인지행동치료 워크숍(2023년 5월 20일 ~ 5월 22일 실시), 2023 인지행동치료 심화과정 웨비나 시리즈(1~3회기), 2024 인지행동치료 기본과정 웨비나 시리즈(1~4회기), 2024 인지행동치료 심화과정 웨비나 시리즈(상반기1~2회기), 2024 삶을 위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집중특화과정(8회기), 2024 인지행동치료 심화과정 웨비나(하반기1~2회기)</li> <li>-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사전인증한 교육 2023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대재난트라우마분과학회 주관 웨비나 교육 「안전기반치료」(2023년 3월 15일 실시), 「쓰기노출치료」(2023년 7월 19일 ~ 7월 20일 실시)</li> </ul>
<p>3항.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</p> <p>4항. 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</p>	

### 3. 세부 서류제출 및 작성지침

#### 1)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기록지(별지서식 제2호) 작성 지침

- ①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 경력 기준 3년간 총 90회기 이상(1년간 30회기 이상) 진행하였음을 명시할 것  
주의) 사례수가 아닌 회기수 기준으로 작성  
예) 1년간 3명의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10회기씩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한 경우 ⇨ 30회기 인정
- ② 매년 개인 인지행동치료 20회기 이상 포함하여 총 30회기 이상이어야 할 것  
예) 1년간 개인 인지행동치료 회기수 : 20회기 + 집단 인지행동치료 회기수 : 10회기 ⇨ 인정  
1년간 개인 인지행동치료 회기수 : 10회기 + 집단 인지행동치료 회기수 : 20회기 ⇨ 개인 인지행동치료 회기수가 1년간 20회기를 넘지 못하므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## 2) 개인 / 집단 인지행동치료 요약기록지(별지서식 제3호, 제4호) 작성 지침

- ① 개인/집단 포함하여 총 3사례의 인지행동치료 요약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
- ② **집단 인지행동치료는 1사례만 인정함. (개인 2사례 + 집단 1사례 = 총 3사례)**
- ③ 개인 인지행동치료 요약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
  - 대상자 명은 익명으로 처리할 것
  - 주로 적용한 인지행동치료 기법이 제시 되도록 3 page 범위 내에서 기술
  - 개인 인지행동치료시 사용했던 계획서, 워크시트, 평가척도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(별첨 가능)
- ④ 집단 인지행동치료 요약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
  - 주로 적용한 인지행동치료 기법이 제시 되도록 기술
  - 전체 회기 중 3회기의 내용 요약하여 제시(1회기 내용은 1 page 범위 내에서 기술)
  - 집단 인지행동치료 시 사용했던 계획서, 워크시트, 평가척도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(별첨 가능)

### 4. 기타 문의 사항

제출 서류준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(010-8766-9665, kamhsw.cbt@gmail.com).